

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08.12.31>

(앞 쪽)

80mm		
제 호	25mm	사 진
소속 : 검사관증	30mm	
직급 :		
성명 :		
주민등록번호		
축산가공물처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임을 증명합니다.		55mm
년 월 일		
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		
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[인]		
시·도지사		

27274-09311일
98.5.20 승인

84mm×59mm
(보존용지(1종) 120g/㎡)

(뒤 쪽)

1. 이 증명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.
2.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목적으로 출입·수거·검사·압류 또는 폐기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